

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[별표 1] <개정 2026. 6. 23.>

지방소방학교장 · 소방서장 · 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

(제3조제1항 · 제4조제2항 · 제6조제1항 · 제7조제2항 · 제8조제2항 · 제12조제1항 · 제13조제2항 ·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)

구 분		직 급
지방소방학교장	특별시, 경기도	소방준감
	통합특별시, 광역시, 그 밖의 도	소방정
지방소방학교의 부장 · 과장 · 팀장 · 연구실장		소방정 또는 소방령
소방서장		소방정
소방서의 과장 · 단장 · 담당관		소방령
119출장소장		소방령
119안전센터장 · 119구조대장 · 119구급대장 · 119구조구급센터장 · 소방정대장		소방경 또는 소방위
119지역대장		소방위
119특수대응단장		소방정
119특수대응단의 과장 · 팀장		소방령
직할구조대장 · 테러대응구조대장 · 119항공대 장 · 특수구조대장		소방령
소방체험관장		소방정
소방체험관의 과장 · 팀장		소방령

비고

1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(市)에 설치된 소방서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소방서로 한정하여 그 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.
2. 위 표에도 불구하고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상이 되는 119안전센터의 선정 기준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또는 화재, 구조 · 구급 출동 횟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

다.